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리

1. '전시회'라 함은 "KOREA OCEAN EXPO(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 산하, 해양·안전 장비전(Maritime & Safety Equipment) 및 중소조선 및 워크보트 산업전(WORKBOAT KOREA)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최하는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인천관광공사, 리드케이웨어를 말한다.
4.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참가신청 계약서를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진다.

[제3조] 납입조건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 계약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관자로부터 인보이스를 접수 후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납부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한다.

[제4조] 전시면적 및 부스위치 배정

1. 전시장 부스 배정은 '전시자'의 전시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약 순, 참가규모에 따라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관자'가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스배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 '주최자', '주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면적 및 부스위치 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관자'는 예정된 면적 및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전시자'는 참가취소나 배상,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전시장의 원상복구

1. '전시자'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외 추가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외 사용료(임대기준표)를 '전시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폐막 후 철거 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야 한다. 만약, '전시자'의 부주의로 '주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전시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장치공사는 송도컨벤시아에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제6조] '전시자' 공시사항

1. '전시자'는 참가신청 계약서에 명시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전시자'는 출품자 명부에 명시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전시회 운영 및 관리

1. '전시자'는 참가부스 내에서 홍보 시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일체의 스피커 사용이 불가하며 모든 홍보는 육성으로만 가능하다. 단, 부득이 스피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함을 인지 하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시 '주관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강력히 통제한다.

2. '전시자'의 홍보활동은 부스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시회장 입·출구에서의 홍보 활동 등 전시회 관람에 불편을 주는 행위(전시품 및 집기의 통로 침범)를 할 수 없으며 일체의 호객행위 및 타 '전시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수 있다.

[제8조] 전시회장 내 경비 및 보안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기 부스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방화규칙

1. 전시품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1. '전시자'가 예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 취소 시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는 총 참가비의 100%, 2개월 전까지는 80%, 3개월 전까지는 50%를 '주관자'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단, 2019년 6월 30일 까지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음
3. '전시자'가 '주관자'와 사전협의 없이 전시면적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재임대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전시자'가 전시회 개시 후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고 철수하고자 할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1. '주관자'는 천재지변, 정부의 요청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을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주관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주관자'는 변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잔액만 참가비의 비율대로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자'는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참가신청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련 '주최자',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